취재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1)]

1. 사건개요

두 명의 기자는 코치, 멘토, 상담 등을 직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담을 녹화하였다. 다음 날 기자들은 사무실에 들러 몰래 카메라를 수거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모든 상담을 녹화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2010. 11. 15. 몰래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상담 내용의 일부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해당 방송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자격이 없는 "치료자"가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고, 청구인을 "염색꾼"으로 묘사하는 한편, "때때로 치료는 쓰다듬는 것 이상으로 끝났었다"고 비판하였다. 다른 TV 프로그램과 TV 방송사 홈페이지에서도 "마요르카의 추정된 치료자. 마요르카에서 그에게 상담 받으러 갑시다"라는 제목 하에 청구인에 대한 보도가 재방송되었다. 또한, 종파주의 및 취약성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RedUne 협회는 그 홈페이지에 스페인어와 독일어로 된 기고를 게재하고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또한, 동 협회는 관계자들에게 2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여기에는 "강탈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청구인이 일부 사람들에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서술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TV 방송사(채널 3), RedUne 협회에 대해 명예권, 사생활권, 초상권의 위법한 침해를 주장하며 마나코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2015. 2. 25. 마나코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TV 방송사가 청구인의 명예권, 사생활권,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RedUne 협회가 청구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016. 4. 28. 발레아레스 제도 고등법원(항소심)은

1) STC 25/2019, de 25 de febrero de 2019.(2019. 2. 25. 결정)

원심을 확정하는 한편, RedUne 협회가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하였다고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2017. 11. 23.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보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2] d)의 우위가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인(TV 방송사, RedUne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항소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청구인은 명예권, 사생활권, 초상권(헌법 제18조 제1항[3])의 침해를 주장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12/2012 결정[4], 74/2012 결정을 통해 몰래 카메라의 기술이 헌법상 금지되는(constitucionalmente proscrito) 성격을 지닌다고 확립한 법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피력하며, 2018. 1. 10.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요지

(1) 다른 기본권 충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익형량(ponderación)은 몰래 카메라에 의한 취재 방법으로 제기되는 기본권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 헌법 제18조 제1항에서 인정되는 개별 기본권은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이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 권리의 보유자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수집과 유포를 제3자에게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헌법적으로 정당한 다른 권리 내지 이익을 우선시하여 이것이 양보될(ceder)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통해 상기 기본권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다.

a) 첫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사생활권과의 충돌이 문제되는 경우,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공적 중요성(relevancia pública de la información)이지 공개된 정보의 진실성이 아니며, 그렇지만 명예권과의 충돌이 문제되는 경우, 진

---

2) 헌법 제20조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인정되고 또한 보호된다.
a) 사상, 이념 및 의견을 구두, 서면 내지 어떠한 다른 방법에 의하든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
b)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생산 및 창조
c) 학문의 자유
d) 어떠한 보급 방법에 의하든 정확한 정보의 발신 내지 수신. 법률은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양심조항 및 직업상의 비밀의 권리를 규정한다.

3) 헌법 제18조 ① 명예권,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권, 초상권은 보장된다.

4) “몰래 카메라 촬영 배상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세계헌법재판동향, 2013년 제1호, 2013, pp.59-61 참조.

실성의 요건이 완화되지 않고 기본권 침해의 전제(presupuesto de la lesión de la intimidad)가 된다고 하였다.[5] 다시 말해, 정보의 진실성의 요소(factor)는 내재적 한계(límite inmanente)로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와 명예권이 충돌될 경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b) 둘째, 그리하여 사생활권과 충돌할 경우, 결정적인 것은 공개된 정보의 공적 중요성이고, 이는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할 권리의 또 다른 내재적 한계에 해당한다. 정보의 자유(libertad de información)는 사생활권, 초상권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공개된 정보의 사회적 이익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된 이후에" 정보의 자유가 이들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자유는 사안에 따라 헌법 제18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인격에 관한 권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정보가 진실하고 여론 형성을 위해 중요해야 하고, 그 내용이 일반의 이익(interés general)의 범주에서 전개되어야 한다.[6]

c) 셋째, 몰래 카메라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이고 유효한 동의의 부재는 본래 침해에 해당하고, 그 결과 기본권 충돌의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12/2012 결정, 19/2014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촬영되거나 사진이 찍힌 사람의 인식 및 이에 따른 동의의 부재는 기본권 충돌을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요소(factor decisivo)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결정요소는 아니다(no es el único factor decisivo).

d) 넷째, 몰래 카메라를 통해 공적 중요성이 있는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적 심판은 구체적인 비례성의 판단(juicio de proporcionalidad específico)을 포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정보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당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하고,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7] 그리하여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 없

5) SSTC 115/2000, de 5 de mayo, FJ 7; 185/2002, de 14 de octubre, FJ 4; 12/2012, de 30 de enero, FJ 7, y 58/2018, de 4 de junio, FJ 7.
6) STC 58/2018, de 4 de junio, FJ 7.
7) SSTC 12/2012, de 30 de enero, FJ 6; 24/2012, de 27 de febrero, FJ 2, y 74/2012, de 16 de abril,

이 의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의 사생활이나 이미지를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정보활동은 과도하거나 비례에 어긋나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몰래 카메라를 저널리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헌법적 심판에는 구체적인 비례성 판단이 요청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의 공적 중요성이나 일반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해서가 아닌 정보획득을 위한 다른 덜 제한적인 수단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sobre la existencia o no de medios menos intrusivos para obtenerla)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보의 공적 중요성은 정보공개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정보획득을 위해 다른 덜 제한적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개인의 사생활과 이미지에 대해 지극히 침해적인 기술 장치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유럽인권재판소의 법리에도 합치되며, 헌법 제10조 제2항[8]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을 적용한 법리는 헌법 조문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해준다.[9]

a) 정보획득의 방법과 기술에 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저장과 재생 - 특히, 특정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대중에 유포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통신 기술에 직면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보다 강화된 감시(vigilancia reforzada)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0]

몰래 카메라와 같이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고 침해하는 기술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debe estar en principio restringida). 물론 몇몇의 경우 보도를 진행하기 위해 비밀취재의 방법이 중요시될 수 있고, 예컨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자는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은 “제한적으로”, 또 “최후의 수단으로써”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11]

FJ 2.

8) 헌법 제10조 ②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스페인이 비준한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라 해석한다.

9) SSTC 303/1993, de 25 de octubre, FJ 8; 119/2001, de 24 de mayo, FJ 6, y 8/2017, de 19 de enero, FJ 4.

10) STEDH de 24 de junio de 2004, Von Hannover c. Alemania, § 70.

b)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정보)의 자유와 사생활권, 초상권을 형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일반의 이익에 관한 토론에 있어 방송된 보도의 기여도, 보도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대중의 인식 정도, 해당 개인의 이전 행동, 정보획득방법과 그 진실성, 공개의 내용, 방식 및 결과,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 기자 또는 언론에 부과된 제재의 중함 등이다.[12] 이후의 결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상기의 기준들을 적용하여 몰래 카메라를 취재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판단하고 있다.[13]

살피건대, 유럽인권재판소는 취재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례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criterios estrictos)에 따른 이익형량을 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설시에 따라, 몰래 카메라에 의한 방법이 사생활권, 초상권에 대한 심각하고 불법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헌법은 일반적으로 취재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렇지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다른 덜 제한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몰래 카메라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정보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는 어떤 경우든 공적 중요성을 갖는 정보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의 공적 중요성은 내재적 한계를 구성한다. 또 몰래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를 공개하는 언론은, 개인의 식별이 일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촬영된 개인의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명예를 불필요하게 훼손시키는 상황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공개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TV 방송사에 대해 제기되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해 헌법적 판단이

11) STEDH de 13 de octubre de 2015, Bremner c. Turquía, § 76.
12) SSTEDH de 7 de febrero de 2012, Axel Springer AG c. Alemania, §§ 89-95, y de 24 de junio de 2004, Von Hannover c. Alemania, §§ 109-113.
13) SSTEDH de 24 de febrero de 2015, Haldimann y otros c. Suiza, §§ 63, 65; de 13 de octubre de 2015, Bremner c. Turquía, §§ 69-70, 77, y de 22 de febrero de 2018, asunto Alpha Doryforiki Tileorasi Anonymi Etairia c. Grecia, § 47.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정보의 자유가 행사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다음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본권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기본권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a) 당해 판결은 두 가지 이유 - 공개된 정보의 진실성(veracidad)과 정보가 지닌 높은 이익(elevado interés) - 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사생활권보다 TV 방송사의 정보의 자유를 우위(prevalencia de la libertad de información)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공개된 정보의 진실성이 아니라 정보가 갖는 공적 중요성이라고 판시해왔다. 하지만 명예권이 침해되는 경우, 진실성의 요건은 완화되지 않고 기본권 침해의 전제가 된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판과정을 통해 취재와 TV 프로그램의 목적이 일반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데 있다는 것이 다투어지지 않았다. 해당 방송은 일반의 이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 분야에서의 사기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검찰 측이 제시한 의견대로, 청구인 한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둔 순간부터 이러한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비밀리에 녹화를 통해 입수되어 전파된 내용은 청구인이 명백하게 위법행위를 행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결과, 어떤 논쟁에 관한 일반의 이익과 구체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공적 중요성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언론을 통해 제기된 호기심과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공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영상에는 청구인과 관련한 사기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는 일반 토론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그 당시까지 명성이 없었던 한 개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생활권 침해를 고려하는데 있어 두 번째 결정적인 요소로 공개된 정보의 공익을 높이 평가한 대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

TV 프로그램은 청구인 개인에 초점을 두어 어떤 결론에 이르기에 불충분한 자료를 공개하였고, 그것이 일반 토론과 어떤 관련성이 없는데, 사생활 침해의 측면에서는 전문 상담을 녹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녹화 대상자의 사전적 동의(consentimiento previo)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내용의 공개는 비례적이지 않은(desproporcionado) 정보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한다.

직업적 특성상 전개되는 전문 상담(consulta profesional)의 경우 사생활권에 의해 보호되고, 이때 사적 영역에 관해 비밀리에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3자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당한 기대가 존재한다. 한편, 청구인이 고객에게 상담 녹화 영상(동일한 상담에 대해 기자가 몰래 카메라로 녹화함)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당해 판결은 중요시 여겼지만, 이러한 사실은 비밀리에 녹화하고 획득한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동의의 부재를 정당화시킬 수 없고, 언론을 통해 영상을 공개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명백하고 유효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기자가 몰래 카메라로 녹화하고 이후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의 획득과 전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준다.

b) 초상권에 관해서도 상기와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구인이 비밀리에 카메라에 녹화되어서, 개인의 신원을 결정짓는 외형과 음성을 표시하는 것에 관해 동의할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다. 또한, 방송 이후 여러 TV 프로그램에서는 청구인의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및 음성을 변조 없이 공개하였다. 청구인의 이미지 및 음성의 공개는 만일 그가 공적 인물(personaje público)이거나 공적 토론(debate público)에 기여하기 위해 엄밀히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공적 인물이 아니고, 일반의 이익을 위한 토론에 기여하거나 여론 형성을 위해 청구인의 이미지 및 음성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c)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명예권 침해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서 또는 이렇게 획득한 영상을 공개해서가 아닌 정보

가 제시된 방식과 TV 프로그램에서 표현한 내용에 기인한다. 실제로 검찰측의 지적과 같이, 공개된 영상에는 조작된 정보(informaciones manipuladas)가 수반되어 있었고(음성 메시지는 청구인이 그의 조언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고객에게 화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영상은 청구인이 고객에게 타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조언하는 것이었음), 무면허 영업을 추정하게 하고 그의 기질("염색꾼", "성 관계가 있고 항상 돈이 있었다", "때때로 치료는 쓰다듬는 것 이상으로 끝났었다")에 관한 진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진술과 표현은 청구인의 명예에 대한 위협(atentatorias contra la reputación)으로 간주될 수 있는바,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와 상관없이 공적 중요성을 갖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 인격의 변화가 뉴스의 중심으로 강조되었다.

살피건대, 당해 판결은 이 사건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보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이는 헌법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방법 - 소위 "몰래 카메라" -이 청구인이 전문 상담에서 하는 행위를 조사하려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비례적이지 않을 뿐더러, 정보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또 청구인의 이미지 및 음성을 변조 없이 TV 프로그램과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정보활동(actividad informativa)에 해당하며, TV에 전파된 내용은 조작된 양상과 모욕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보활동을 위해 불필요한 것이었다.

(4) 이제 청구인이 TV 방송사와 별개로 RedUne 협회에 대해 주장하는 명예권, 초상권의 침해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우선 초상권과 관련하여 당해 판결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협회 홈페이지 기고에 포함된 사진이 글에 대한 보조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시하였다. 본 재판부는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여 당해 판결의 결론을 확인한다. 해당 사

진은 청구인의 사적 영역에서 보존되고 꺼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사진 획득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된 바가 없다. 사진은 비영리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예방과 정보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본 재판부는 공동피청구인인 협회 홈페이지에 청구인의 이미지를 공개한 것이 청구인의 초상권에 있어서 비례에 어긋나는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b) 두 번째 주장은 명예권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은 협회에서 보낸 2건의 이메일에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본 재판부는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 쟁점에 대해서도 당해 판결의 결론을 확인한다. RedUne 협회는 고발에 관한 일반의 이익을 추구하여 엄밀히 필요 이상으로 명예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desalentarse).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이메일의 목적은 고발된 사람의 행동에 관해 경고하고,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메일은 일반적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협회 관계자, 통상 피해자나 그의 가족에게 발송되었는데, 이것의 유포는 언론을 통해서 특히, TV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이었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용(otorgamiento parcial)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문의 효력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 재판부는 판단이유 9[14]에 따라 TV 방송사에 의한 청구인의 사생활권, 초상권, 명예권의 침해를 확인한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RedUne 협회에 대한 청구인의 초상권, 명예권 침해의 주장을 기각한다.

헌법소원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결정에는 당해 판결을 부분적으로 무효로 선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조직법 제55조 제1항 a[15]),

14) 이 글에서 결정요지 (3)에 해당함.

15) 헌법재판소조직법 제55조 ①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은 다음의 하나 이상의 선고를 포함한다.
a) 보호되어야 할 권리 내지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는 판결, 처분 내지 결정의 무효 선언. 경우에 따라 그 효력범위의 확정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 달리, 소급효(retroacción)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보상액에 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당사자들 간 쟁점이 되었으나, TV 방송사가 제기한 상고심에서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판단한 보상액 기준을 변경할 만한 주장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발레아레스 제도 고등법원이 판결에서 TV 방송사에 의한 청구인의 사생활권, 초상권, 명예권의 침해를 인용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선언하고, 동 고등법원에서 이러한 침해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확정적인 판결을 내린다.

3. 주문

첫째, 판단이유 9에 따라 청구인의 사생활권, 초상권, 명예권의 침해를 확인한다(헌법 제18조 제1항).

둘째, 청구인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헌법재판소조직법 제55조 제1항 c) 발레아레스 제도 고등법원이 판결에서 TV 방송사에 의한 청구인의 사생활권, 초상권, 명예권의 침해를 인용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선언하고, 동 고등법원에서 이러한 침해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확정적인 판결을 내린다.

셋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b) 헌법적으로 선언된 내용에 따른 권리 내지 공적자유의 확인

c)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여 경우에 따라 청구인의 완전한 권리 내지 자유의 회복